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2. 26.(월) 배포즉시 < 2.26.(월) 석간 > 배포 2023. 2. 26.(월)

세계무역기구(WTO) 「투자원활화협정」 참여국 123개국, 협정문 타결 및 세계무역기구(WTO) 협정 편입 추진 선언

- 참여국 외국인직접투자 증대, 개도국 글로벌공급망 편입 등 기대효과

제13차 WTO 각료회의(MC-13, 2.26~29) 개최 계기 2.25.(일) 오후 18:45(현지시각) UAE 아부다비에서 한국과 칠레가 공동주관한 가운데 응고지 오콘조-이웰라(Ngozi Okonzo-Iweala) WTO 사무총장과 협상참여국 장관들이 참석하여 WTO 「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(이하 투자원활화협정)*」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였다.

* 영문: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 (IFD Agreement)
** 동 공동선언은 164개 WTO 회원국 중 123개국이 공동발의자(co-sponsor)로 참여

이번 공동각료선언은 WTO 투자원활화협정의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WTO 협정 편입 등 향후 절차에 대한 참여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발표되었다. 공동각료선언 발표 직후 투자원활화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위한 편입요청문이 회람되었으며, 협상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회의 기간에 동 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추진할 예정이다.

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영사에서 “전세계적 복합위기(poly-crisis)에 대한 대응으로 WTO 투자원활화협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WTO 투자원활화협정은 각국 투자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개도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2020.9월부터 복수국간협상*으로 본격출범하여 작년 7월 협정문이 합의되었다. 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 동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주제네바대표부의 박정성 경제차석대사가 협상을 주재해 왔다.

한편, 「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」 결과물인 관련 규범**도 WTO 내 발효에 필요한 최종문안이 확정(’24.1월)됨에 따라, 우리나라는 관련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WTO에 통지문을 제출(‘24.2월)하였다.

* 이미 개방된 서비스 분야에서 면허·자격 취득에 관한 국내규제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, 미·중·EU·영·싱 등 전세계 서비스 교역량의 92%를 차지하는 69개국 참여하여 규범 마련
** 향후 절차 : WTO 문서 회람(WTO 내 발효절차 완료) → 공표(관보게재)

담당 부서 <총괄>	다자통상법무관 세계무역기구과	책임자	과 장	윤정원 (044-203-5920)
		담당자	팀 장	최원엽 (044-203-5921)
			사무관	남은영 (044-203-592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「WTO 투자원활화 협정」 개요**

※ 협정문 공식명칭 :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
(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)

1. 협상 경과

□ **(협상 개시) '17.12월 MC-11에서 투자원활화 공동성명 발표** 이후 '20.9월부터 복수국간 공식논의를 개시

□ **(주요 과정) '22.12월 협정문 초안(Draft IFD Agreement)** 회람
'23.1월 다보스 포럼 계기 투자원활화 장관회의 개최(주재: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) → '23년 상반기 협상 진행하여 **'23.7월 협정문 합의**

2. 협정문 목표 및 주요내용

□ **목표**

○ 각국 투자 조치의 **투명성, 행정절차의 효율성** 등 **절차적* 측면** 개선을 통해 개도국의 글로벌 투자 참여 및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

* 개도국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, 투자자 보호와 시장개방 등 실체적 내용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

□ **주요 내용**

○ **(투명성)** 투자관련 법·규제, 승인 요건 및 절차 등 **주요 정보 공개, 단일정보창구** 사용, **사전공표 및 의견제시 기회부여** 등 규정

○ **(효율성)** 승인절차의 **간소화 및 신속화**를 위한 의무*, **합리적인 수수료** 부과 의무, **전자정부 사용** 장려 등 규정

* 연중 상시 신청접수, 사본수용, 처리현황 정보제공, 불완전신청시 추가자료 제출기회 제공 등

○ **(개도국 역량강화 지원)** 개도국들 역량에 따른 이행기간 유예 가능, 유예기간 동안 선진국들에 의한 역량강화 지원 진행

○ **(기타) 연락창구** 운영, 국내규제 **정합성** 및 회원국 간 **협력**사항, 기업의 사회적 책임·반부패 등 범분야 이슈 포함

참고 2 「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」 개요

※ 영문명칭 : the Negotiation in the 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tic Regulation

1. 추진 배경

○ **이미 개방된 서비스 분야**에서 면허·자격 취득, 기술표준 등에 관한 국내규제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WTO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**추가 규범* 마련**('24.2월 현재 우리, 미국, EU, 중국, 일본 등 69개국 참여)

* (행정절차 투명성) 면허·자격 취득 요건·절차 공개, (서비스 공급업자 권익보호) 취득신청 처리과정에서 신청자 권익보호, (규제개선) 단일창구 접수, 전자신청 수용 등

2. 추진 경과

○ ('18.3) 서비스 국내규제 관련 규범 마련을 **복수국간 협상** 개시

○ ('21.12) 복수국간 **협상 타결** 선언

○ ('22.12) 양허표 개정* **WTO 인증절차 개시**

* 참여국간 합의에 따른 발효절차로서, 기존 양허표에 상기 규범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추가

○ ('24.1) 인증과정에서 이의제기국과 협의결과 **양허표 문안 최종 확정**

○ ('24.2) 양허표 정정 국내절차 진행, WTO에 **정정 양허표 제출**

* 향후 절차 : 이의제기 철회(인증절차 완료) → 공표(관보게재) → 규범 발효

3. 의의

○ 우리 포함, 미, 중, EU, 일, 싱 등 **전세계 서비스 무역의 92% 차지하는 69개국이 참여**함으로써 서비스무역 활성화에 기여

*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행을 통해 연간 전세계 서비스 교역비용 1,520억불 절감 예상(OECD-WTO Trade Policy Brief, '21.11)

○ 동 규범은 추가 시장개방이 없고, 국내법제*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**규범 수용에 따른 부담은 적음**

* 행정절차법, 민원처리법, 행정규제기본법, 전자정부법 등에 규범을 상당부분 수용

○ 면허·자격취득 **정보수집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**, 신규시장 창출 환경조성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